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77

발의년월일 : 1992년 6월 18일
발의자 : 임병섭의원외7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의규칙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상임위원회가 구성 됨에 따라 종래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케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한다.

나. 예산 및 결산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규칙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등록) 중 “간사에게”를 “사무국에”로 한다.

제 3 조(의석배정)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 15 조(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사일정)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8 조(의안의 제출·발의) 중 “제출”을 “제출·제안”으로 하고, “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를 “한파”로 한다.

제 19 조(의안의 회부)의 제목 “의안의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침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9조의 2 내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특별위원회 회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의 3(심사기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전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의 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중 “의제가” 앞에 “본회의의”를 삽입 한다.

제23조(번안)중 “발의한다”를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2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안전심의) ①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전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전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중 “선출된”를 “매회기 선출 된”으로, “간사가”를 “사무국장이”로 한다.

제50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 2(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5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 2(연석체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체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체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체의에 부의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체의는 안전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 2(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예산안심의)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3항중 “예결위원회”를 “소관상임위원회”로, “본회의”를 “예결위원회”로 한다.

제60조 (예산안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4조 (결산안의 심사)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 (결산안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3조 (경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장의 제목중 “제11장”을 “제9장”로 한다.

보칙의 제목 “보칙”을 “제10장 보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 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u>의회간사에게</u>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u>사무국에</u>.....</p>
<p>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u>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u> <u>전의 의석은 간사가 지역선거구 순서에</u> <u>따라 임시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조(의석배정) ①.....<u>운영위원회와</u> <u>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u> <u>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u> <u>한다</u></p> <p>②<u>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u> <u>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u> <u>임시로 정한다.</u></p>
<p>제15조 (의사일정)</p> <p>①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u>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u> <u>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u> <u>하고 개의할 수 있다.</u></p>	<p>제15조 (의사일정)</p> <p>①(현행과 같음)</p> <p>②<u>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u> <u>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u> <u>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u></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u>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 한다.</u></p>	<p>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u>제출·제안.....</u><u>한다.</u></p>
<p>제19조(의안의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u>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u></p> <p>②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u>보고하</u> 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p> <p>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 한때에는 운영위원 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p>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u></p> <p><u>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신 설)</p>	<p>제19조의 2(특별위원회 회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률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9조의 3(심사기간) <u>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전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u> <u>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u></p>
(신 설)	<p>제19조의 4(위원회의 제출의안) <u>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p>
제21조(수정동의) ①(생략)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u>의제가 된다.</u> ③——④ (생략)	<p>제21조(수정동의) ①(현행과 같음) ②..... <u>본회의의 의제가.....</u> ③——④ (현행과 같음)</p>
제23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p>제23조(번안)</p> <p>.....</p> <p>.....</p>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u>발의한다</u>.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p>	<p>.....<u>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u> <u>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u> <u>의결한다</u>..... </p>
<p>제24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u>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u>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24조(안건심의) ①..... <u>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u> <u>보고를 듣고.....다만, 위원회의 심사를</u> <u>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u> <u>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u> <u>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u> ②——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4조의 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u>선출된</u> 2인 이상의 의원 및 <u>간사가</u>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p>	<p>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p> <p>.....<u>매회기 선출 된</u>.....<u>사무국장이</u></p> <p>.....</p> <p>.....</p>
(신 설)	<p>제50조의 2(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p>
(신 설)	<p>제55조의 2(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p> <p>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p> <p>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9조의 2(준용규정) <u>위원회에 관하여 이</u> <u>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u> <u>이 규칙의 다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60조(예산안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u>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u></p> <p>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u>본회의에 부의한다.</u></p> <p>③의장은 예산안을 <u>예결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예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u>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u></u></p>	<p>제60조(예산안심의) ①..... <u>이를 소관</u> <u>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u> ②.....<u>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u> ③.....<u>소관상임위원회</u>..... <u>소관상</u> <u>임위원회</u>..... <u>예결위원회</u>.....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4조(결산안의 심사) ①<u>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4조(결산안의 심사) ①<u>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u></p> <p>②<u>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u></p> <p>③<u>의장이 결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할 때에는 제60조 제3항을 준용한다.</u></p>
<p>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u>징계자격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 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여 심문 할 수 있다.</u></p> <p>②—— (생 략)</p>	<p>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u>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p>	<p>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p>
제11장 정 계	제9장 정 계
보 칙	제10장 보 칙